

I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**최고 300%의 가산세**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**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: 15만원)**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

※(관련법령)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·방법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 사이트 (e-revenuestamp.or.kr)
- 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

■ 가산세 개정사항 ('21.1.1.부터 적용)

- ※(관련법령)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구입처	우체국, 은행(선 통화 후 방문)
구입방법	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 용도: 인지세 납부 - 과세문서 종류: 1. 부동산등 소유권 이전 - 기제금액: 분양대금 (총 공급대금) - 매수: 1매 - 성명/주민등록번호/연락처 기재 ③ 결제(현금납부만 가능)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 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I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-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④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- ① 용도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: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
- ③ 금액: 150,000원
- ④ 건수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⑤ 출력

※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